

<p>제782조(혼인외의 자의 입적) ① 가족이 혼인외의 자를 출생한 때에는 그 家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p> <p>② 혼인외의 출생자가 父家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母家에 입적할 수 있고 母家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一家를 창립한다.</p>	<p>제782조(혼인외의 자의 가족) ① 혼인외의 자는 친권행사자인 母 또는 父의 가족원이 된다. 다만 친권행사자인 母 또는 父가 그 부모와 같은 가족원인 때에는 혼인외의 자와 함께 새로 가족을 구성한다.</p> <p>② 친권행사자의 가족에 속할 수 없는 혼인외의 자는 새로 가족을 구성한다.</p>
<p>제783조(양자와 그 배우자등의 입적) 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와 함께 양가에 입적한다.</p>	<p>제783조(養子の 가족) 양자는 양부모의 가족원이 된다. 다만, 양자에게 배우자 또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784조(夫의 혈족 아닌 妻의 직계비속의 입적)① 妻가 夫의 혈족 아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夫의 동의를 얻어 그 家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전항의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他家의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제784조(부부 일방의 자의 가족) ① 부부 중 일방의 혼인하지 아니한 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 부부의 가족원이 될 수 있다.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자는 새로 가족을 구성한다.</p> <p>② 前婚중에 출생한 자와 한 가족인 父 또는 母가 혼인하여 새로 가족을 구성하는 때에는, 자는 그 가족원이 된다. 다만 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는 새로 가족을 구성한다. 자가 미성년인 때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p>
<p>제785조(호주의 직계혈족의 입적) 호주는 他家의 호주 아닌 자기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을 그 家에 입적하게 할 수 있다.</p>	<p>제785조 삭제</p>

<p>786조(양자와 그 배우자 등의 복적) ① 양자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그 生家에 복적한다.</p> <p>② 전항의 경우에 그 生家가 폐가 또는 무후된 때에는 生家を 부흥하거나 一家를 창립할 수 있다.</p>	<p>제786조(파양된 子의 가족) 입양이 취소 또는 파양되는 경우 미성년인 子는 친생부모 또는 그 일방의 가족원이 된다. 다만, 그러하지 못할 때에는 새로 가족을 구성한다.</p>
<p>제787조(妻 등의 복적과 일가창립) ① 妻와 夫의 혈족 아닌 그 직계비속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그 親家에 복적하거나 一家를 창립한다.</p> <p>② 夫가 사망한 경우에는 妻와 夫의 혈족 아닌 그 직계비속은 그 親家에 복적하거나 一家를 창립할 수 있다.</p> <p>③ 전2항의 경우에 그 親家가 폐가 또는 무후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복적할 수 없는 때에는 親家를 부흥할 수 있다.</p>	<p>제787조(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의 구성) ① 부부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각자 새로 가족을 구성한다.</p> <p>② 미성년인 子는 친권행사자의 가족원이 되고, 성년에 달한 子는 그의 의사에 따라 父 또는 母의 가족원이 될 수 있다.</p>
<p>제788조(분가) ① 가족은 분가할 수 있다.</p> <p>② 미성년자가 분가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제788조(子의 가족구성) ① 성년에 달한 子는 새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p> <p>② 미성년인 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새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p>
<p>제789조(법정분가) 가족은 혼인하면 당연히 분가된다. 그러나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789조 삭제</p>

<p>제791조(分家호주와 그 가족) ① 分家호주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그 分家に 입적한다.</p> <p>② 本家호주의 혈족 아닌 分家호주의 직계비속은 分家に 입적할 수 있다.</p>	제791조 삭제
<p>제793조(호주의 입양과 폐가) 일가창립 또는 분가로 인하여 호주가 된 자는 타가에 입양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p>	제793조 삭제
<p>제794조(여호주의 혼인과 폐가) 여호주는 혼인하기 위하여 폐가할 수 있다.</p>	제794조 삭제
<p>제795조(他家에 입적한 호주와 그 가족) ① 호주가 폐가하고 他家에 입적한 때에는 가족도 그 他家에 입적한다.</p> <p>② 전항의 경우에 그 他家에 입적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은 一家를 창립한다.</p>	제795조 삭제
<p>제796조(가족의 특유재산) ① 가족이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p> <p>② 가족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가족의 공유로 추정한다.</p>	<p>제796조(가족원의 특유재산) ① 가족원이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p> <p>② 가족원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가족원의 공유로 추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혼인 제4절 혼인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p> <p>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p> <p>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p> <p>③ 妻는 夫의 家에 입적한다. 그러나 妻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夫가 처의 家에 입적할 수 있다.</p> <p>④ 전항 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子是 母의 姓과 本을 따르고 母의 家에 입적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항 혼인 제4절 혼인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p> <p>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현행과 동일</p> <p>② 현행과 동일</p> <p>③ 삭제</p> <p>④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친족회</p> <p>제966조(친족회의 소집) 친족회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호주,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소집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친족회</p> <p>제966조(친족회의 소집) 친족회는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회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소집한다.</p>
<p>제968조(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호주는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p>	<p>제968조(친족회에서의 의견개진)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호주승계 제980조-제995조</p>	<p style="text-align: center;">제8장 호주승계 삭제</p>

『호주제 폐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김영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 法治國家에 있어서 法과 社會通念 문제

- 현재 우리의 법 체계상 최상위법인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지며 (제10조) 모든 국민은 法 앞에 平等하여 누구든지 性別·宗教 또는 社會的 身分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법(령) 제정의 기본원칙은 그 시대의 사회현실과 통념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령)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언제든지 개정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이러한 법개정에 있어서도 반드시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법의 기본인 『헌법』의 「기본 이념」을 무시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 현재 戶主제 폐지를 둘러싼 민법 개정과 관련해서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은 외견상으로는 변화된 사회현실과 내려온 전통 생활의식과의 문화적 충돌(갈등)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면, 즉 개인의 행복추구권은 性別 차별 없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 이념」에 입각하여 고

려하여 보면 현재의 戶主제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 다만 문화적 충돌 및 이로 인한 급격한 사회적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점도 엄연한 현실인 바, 완전 폐지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 현재 정부에서는 그 시기를 2007년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적 유예가 적정한지는 이 자리에서 論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단계를 거쳐 추진함이 가장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은 이 자리에서도 論할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 현행 民法에 남아있는 호주제의 문제점들

- 지난 1991년 민법 개정 時, 호주의 제반권리 및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가 삭제되는 등 권한이 대폭 축소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호주의 권리의무를 삭제하면서도 여전히 가적(家籍)편성에 관한 원리는 그대로 남았고, 호적법은 가적을 호적편제의 기준으로 삼고있어 호주제도는 여전히 상징적 의미가 남아있습니다.
- 즉 호적법이 호주를 기준으로 父系혈통중심으로 편성되어있어 이로 인해 호주제도와 호적제도를 혼돈하여 호주제 폐지가 곧 우리나라 가족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호주제가 갖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性的 차별을 금하는 헌법 정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성행하는 남아선호 사상 즉 남성 우위의식을 강화한다는 점입니다.

- 이러한 우위의식은 현행 민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호주승계는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 順序(984조)라든지, 子는 父의 姓과 本을 따르고 父家에 入籍한다(781조)는 조항과 특히 妻는 夫의 家에 入籍한다(826조 3항)는 조항은 아내와 남편의 평등권을 경시하고 양성차별을 조장하는 가장 대표적 사례입니다.

- 동 조항들은 헌법만이 아니라 타 법률과도 상충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된 『國籍法』에서는 이미 父系혈통주의 원칙을 폐기하고 父母 兩系혈통주의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법들간의 일관성 유지차원에서라도 호주제 유지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호주제의 문제점들

- 현재 우리 사회의 가족구성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결혼한 2.5쌍 가운데 한 쌍이 이혼하고 있으며 재혼 또한 당연히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여성의 재혼 비율은 1991년 7.1%에서 2000년에는 14.5%로 2배 이상 높아졌으며, 특히 초혼 남성과 재혼 여성의 혼인은 91년 2.5%에서 지난해에는 4.9%로 많아졌고, 남녀 모두 재혼인 경우도 4.6%에서 9.6%로 크게 늘었습니다.
- 그런데 호주제 유지를 반영하고 있는 관련법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수많은 재혼가정들을 고통과 어려움 속에 몰아넣고 있다는 사실이 큰 문제입니다.
- 이러한 법적 미비로 인한 몇 가지 병폐를 들어보겠습니다.

- ① 호주승계 순위가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규정돼 손자가 누나, 어머니, 할머니의 호주가 되는 등 불합리하고 성차별적인 호적 편제를 낳습니다. 이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감정이 내재된 것으로 대를 이을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는 남아선호사상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 ② 이혼여성이 자녀의 양육책임자로서 실제 자녀를 보호하는 친권자라 하더라도 자녀는 모가의 호적으로 이적할 수 없고, 모가 일가창립하여 단독호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자녀를 입적시킬 수 없습니다.
- ③ 재혼 시에도 전남편 자녀에 대한 성본 및 호적을 재혼한 남편의 성본 및 호적으로 변경할 수 없어, 자녀가 양부와 다른 성씨 때문에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재혼시 심지어 아이를 사망신고한 후 출생신고를 다시하는 탈법적인 방법까지 쓰기도 합니다.
- ④ 미혼모가 자녀를 자신의 성을 따라 호적에 입적시킬 경우, 아버지를 밝힐 수 없게 됩니다.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해 부가 인지하면 무조건 부의 호적에 입적돼야 하는 강제규정 때문에 미혼모가 자녀를 자신의 성을 따라 호적에 입적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 인지하지 않았더라도 부의 성 본을 따라 모의 호적에 올릴 수 있는데, 출생신고서나 호적의 부모란에는 부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미혼모의 호적에 자녀를 올리려면 부의 성명을 '미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⑤ 남편은 처의 혈족이 아닌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키는 데 처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처는 남편의 혈족이 아닌 혼인 외 자녀를 입적시키는데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부부평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여성의 혼인 외 자녀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한

계가 있습니다.

- ⑥ 처가 남편 이외의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신의 친자식이 아님을 주장하는 親生否認 소송은 남편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처의 호적에도 생부의 호적에도 입적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병폐의 常存은 결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헌법 36조 1항)하고 나아가 國家는 母性的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동조 2항)” 는 헌법의 기본 정신마저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 결국 호주제 유지는 현대사회의 다양해진 가족 관계를 담아내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제도일 뿐 아니라 가족공동체로서의 남녀 평등을 보장코자하는 헌법의 기본이념과도 상충하는 것입니다.
-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점이 또 있습니다. 호주제의 존폐 논란이 결코 남녀간의 양성 평등을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세대와 세대간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사실입니다. 친자이든 양자이든, 친부(모)이든 양부(모)이든, 돌봐야 할 자식세대에게 벗어날 수 없는 業報같은 올라미를 씌운다는 것은 부모세대의 무책임한 職務遺棄라는 사실입니다.
- 사회는 변화하고 역사는 발전합니다. 남녀 평등이라는 민주적 가족 제도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세대간의 갈등을 치유하는 한 방편으로서 호주제를 폐지하는 것이 이 시대가 갖는 또 하나의 역사적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풀 것인가?

- 法治國家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은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지름길 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법개정만이 만능의 寶刀는 결코 아닙니다. 朝三暮四 式 법개정이라면 그냥 두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당대의 법은 곧 당시의 사회 모습을 담은 시대정신이라 합니다. 시대정신이란 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 시간도 필요하고 지속적인 노력 역시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호주제 폐지가 결코 현 가족제도의 훼손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남녀간의 평등과 세대간의 조화를 가져다준다”는 「호주제 폐지의 필요성」이 적극 알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종교계, 법조계 및 각종 여성·시민단체가 모여 발족한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처럼 諸사회단체가 펼쳐고 있는 의욕적인 홍보활동도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 오늘의 이 토론회 개최 역시 같은 맥락에서 값진 자리라고 봅니다.
- 물론 정치권 및 행정부의 법개정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정부는 호주제 폐지를 200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 2007년이면, 공교롭게도 금년 대통령선거 이후 이어받을 다음 정권의 임기와 겹칩니다. 차기 정권의 핵심 추진과제의 하나로 “호주제 폐지”를 선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 정치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차기정권을 어느 정당이 맡을

것인지를 불문하고 호주제 폐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一助 할 것임을 밝히면서 토론을 마칠까합니다.

-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신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호주제 폐지와 민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요지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1. 첫머리에

호주제도의 존폐 논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 호주제도가 위헌인가의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날 것인가와는 관계 없이 입법적인 개선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호주제 폐지를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입법안을 놓고 논의를 하는 것은 매우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호주제 폐지라는 대전제에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¹⁾

2. 몇 가지 고려사항

그러나 법리적으로 호주제 폐지가 정당하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하나는 호주제 폐지가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동성동본 금혼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족법 개정안이 제15대 국회에서 유럽 등의 극심한 반발로 인하여 폐기되는 점을 볼 때 상황은 별로 낙관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차선책으로서는 호주를 둘 것인지, 호주를 둔다면 누가 호주가 될 것인지를 자유 선택에 맡기는 방

1) 여성부, 호주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1 참조. 이 연구에는 본인이 공동 연구원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²⁾

물론 이 문제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이 전략적으로 더 현명할 것인가 하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지금 개정안은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차선책도 한 번 고려할 가치는 있을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문제는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자녀의 성 결정 문제에도 있습니다. 본인도 자녀가 원칙적으로 父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고 있는 현재의 민법 규정에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³⁾ 그러나 이 문제를 호주제의 폐지와 함께 손을 대는 것은 반드시 현명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부의 성과 본을 따르지 않아도 좋은가 하는 것은 호주제도보다도 훨씬 민감한 문제이며, 일반 국민 가운데에도 호주제 폐지에는 찬성하더라도 자녀의 성 문제에 관하여는 종래의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러한 입법적인 해결방식보다는 오히려 사법적인 해결방식, 즉 헌법 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맡기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3. 민법과 호적법의 관계

아래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저도 개정안의 실제적인 내용 자체에 대하여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를 어떤 방법으로 규율할 것인가, 즉 민법 자체의 개정에 의할 것인가, 아니면 호적법의 개정에 의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의 대부분은 실체법인 민법에서 규율할 필요가 없고 호적법에서 다루면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대 개정안 제780조에서는 기준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자체만으로는 기준인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사무처리와 검색의 편의를 위하여서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인데,

2) 위 註1)의 문헌, 161면 이하 참조.

3) 尹眞秀, “憲法이 家族法の 變化에 미친 影響”, 서울법대와 프라이부르크 법대 간의 공동심포지움 자료집(2002. 10. 11-12), 320 - 321면 참조.

이처럼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와 관계없는 기준인에 관한 규정은 호적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민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살펴본다면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가족에 관한 여러 규정도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면 구태여 민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일본 민법에는 가족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굳이 가족에 관한 규정의 실체법상 의미를 찾자면 개정안 제796조 제2항이 가족원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가족원의 공유로 추정하는 것 정도일 것이나(현행 제796조 제2항과 큰 차이가 없다), 부부 재산의 공유 추정에 관한 민법 제830조 제2항 외에 별도로 가족원의 공유 추정 규정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⁴⁾

4. 호적(가족부)의 편성 원리에 대하여

우선 개정안에서는 호적을 가족부로 대체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명칭을 무엇으로 하는가 하는 점은 반드시 중요한 것이 아닐 것이며, 오히려 명칭의 변경에 따른 혼란만이 우려됩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가족부의 편성원칙으로서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는 종래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대체로 개정안과 같이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을 택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⁵⁾ 본인도 이러한 방안이 현실적으로 입법하기에는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개인을 가족이라는 틀 안에 묶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중

4)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아예 민법 제778조 내지 제796조를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성특별위원회, “現行 家族法の 問題點과 改善方案 研究”, 1999. 12, 43면 이하(李熙培 집필); 鄭玟秀, “戶籍의 新編製 方案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9, 145면 이하 참조.

5) 曹大鉉, “戶主制度의 廢止와 戶籍의 編製”, 民事判例研究 X VIII, 1996, 628면 이하; 여성부(註4), 105면 등 참조.

래의 호주제 하에 있어서와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기술적으로는 기준인을 정하여야 한다는 문제도 생깁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이정희 변호사님이 언급하고 계시는 1인1적 방식도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⁶⁾

그렇지만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개정안과 같이 夫婦 同籍, 親子 同籍, 2대 가족의 원칙을 택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⁷⁾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을 채택하는 경우에 기준인⁸⁾을 누구로 할 것인가도 문제입니다. 개정안에서는 기준인은 1인인 것을 전제로 하여 기준인은 부부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추첨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굳이 기준인을 1인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⁹⁾ 이 경우에 추첨으로 정한다는 것은 개정안에 대하여 비난 거리를 제공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자녀 중 연장자가 기준인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에 형제자매가 한 가족으로서 가족부에 오른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 자체로는 이 점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입니다.

5. 다른 사항에 대하여

이 외에 개정안의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성과 본 결정에 관하여 개정안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父 또는 母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하였으나, 차라리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할 당시에 자녀의 성 문제에 관하여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어

6) 鄭玿秀(註4), 190면 이하 참조.

7) 曹大鉉(註4), 629 - 630면 등 참조.

8) 종래 '籍主'라는 용어도 사용되었고, 일본 호적법에서는 筆頭者라고 부르고 있다.

9) 김상용 교수는 기준인을 부부 2인으로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떨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따르는 경우에 혼인외의 자를 父가 인지하는 경우에 자녀의 성과 본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하여 명백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처럼 보이나 차라리 이 경우에는 종래의 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의 길을 열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주제 개선은 시대의 요구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으로 호적제도 개선 시급

이미경 (국회의원, 민주당 은평구갑지구당)

1. 현행 ‘호주제’ 개선의 시급성

○ 호주제 폐지에서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내용은 ‘호주’를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家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로 규정하고, 남성우선의 승계순위를 법으로 정한 현행 제도의 정비임. 이는 우리나라 가정의 비민주성과 남아선호사상을 온존시키는 핵심적인 조항임.

○ 또한 혼인한 여성의 夫家입적을 강제한 것은 여성은 가족의 구성원 으로서만 머물게 하는 성차별을 전제로 한 조항임. 자녀는 기본적으로 부가에 입적하고, 아버지를 알 수 없을 경우만 母家에 입적하도록 한 父家우선입적 규정도 母家에 입적한 자녀에 대한 차별임. 특히 남편의 혼외子是 부인의 동의없이 부가에 입적하면서 여성의 경우만 남편의 동의를 필하도록 규정한 현행 민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위와 같은 현행의 호주제는 헌법이 정한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원칙 위배되는 위헌조항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우리나라가 1985년에 가입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15조(사)항에는 ‘가족의 성을 선택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유엔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가입국으로서 호주제 개선 권고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국제관계의 신뢰차원에서라도 아들 위주의 호주 승계 순위 및 부성 강제조항은 개선되어야 함.

- 현재의 민법의 기초가 일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학계의 중론임. 그러나 일본의 경우도 호주와 가족의 관념이 봉건적이라고 판단하여 1919년 이후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1948년에 부부와 자녀를 기본단위로 하는 국민신분등록제로 개선하였음.
특히 유교사상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중국도 우리와 같은 호주제와 신분등록제는 없으며, “중화인민공화국호구등기조례”에서 사회치안의 유지, 도시인구제한, 관련부문에의 호구자료 제공, 신분증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부부의 경우도 동일호적에 반드시 입적하도록 강제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호주를 규정, 아들 우선으로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父姓을 강제하는 것이 전통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현실은 충분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수정되어야 함.
- 특히 호주제는 가계의 전통과 뿌리를 찾는 일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이 국민들에게 강조될 필요가 있음. 서울대 법학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호주제와 가족붕괴 및 효의 실천과의 연계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2%가 호주제와 가족붕괴는 무관하며, 76%의 응답자가 효의 실천과도 무관하다는 응답했음.
- 국가에 의한 국민의 신분을 등록, 관리하더라도 호주를 중심으로 직계 준비속의 출생, 결혼, 이혼 등 방대한 사항을 모두 호적에 기록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이 지나치게 관리되어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00년을 기준을 볼 때 3쌍이 결혼을 하면, 반대 편에서는 1쌍이 이혼하는 것이 현실임. 또한 한부모 가

족이 1985년의 경우 전체 가족의 8.9%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9.4%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혼에 의한 경우가 21.9%에 이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자녀를 책임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일방적으로 父性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재혼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생부의 성만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실의 다변하는 가족의 형태를 제도가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이혼 혹은 재혼가정을 사회적으로 낙인찍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2001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부인 중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비율이 44.2%이며, 1회 경험은 24.9%, 2회 이상 경험은 19.3%임. 반인권적인 인공임신중절이 횡횡하는 이유는 남아선호사상에 기인하는 바가 매우 큼. 현재 남아 100명당 여가 평균이 110명이며, 셋째아의 출생성비는 남아 100명당 여야 143.9명으로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지경에 이릅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진출 욕구와 성차별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인한 30세 이상 여성의 미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기혼여성 1인당 출산율도 2001년 현재 1.3명으로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임.

호주제가 가정의 민주화, 개인의 인권보호, 남녀평등의 실현에 미치는 부정적인 요인이 심각한 지경인 것이 명백한 이상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와 의회의 당연한 역할임.

2. 어떻게 바꿀 것인가?

- 호주제 폐지 및 새로운 호적제도의 마련에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첫째) 헌법으로 보장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혼인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함.

둘째) 가족 관계가 혼인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부부의 평등과 미혼자녀의 복리증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할 것임

셋째) 이미 보편화된 2대(부모와 미혼자녀)가족 및 이혼 및 재혼이 일상화된 현실의 가족관계를 전제로 해야 함.

- 호주제 폐지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양친자제도”의 개선을 먼저하고, 호주제의 근본문제를 다루자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호주제의 폐지와 관련하여서도 ‘1인 1호적제’와 ‘가족별편제’방식을 놓고 다양하게 의견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은 호주제 폐지에 대한 반론이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양친자제도”를 개선하여 우선 재혼가정의 고통을 완화해 주는 방안이 고려될 수는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호주제 폐지와 그에 따른 근본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봄.
- 호주제폐지 후 대안과 관련하여서는 호주제 폐지 후 개선방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가정법률상담소>, <서울대법학연구소>의 국민의식조사 <호주제폐지시민연대>의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에서도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하는 기본가족별 편제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제시된 점, 가족붕괴에 대한 호주제폐지 반대측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점, 특히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 등을 고려할 때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하는 기본가족별 편제”가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됨.
- 호주제 개선과 관련하여 최대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부성강제의 원칙을 부부간 선택사항으로 규정한 점이라고 생각됨.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父姓을 법으로 강제한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 父性강제조항(부자동성원칙)이 근본적으로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함. 따라서 각론 상의 이견이 존재하는 문제는 향후의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수정·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발제하신 이정희 변호사의 민법 개정에 대체적으로 동의함.

- 호주제의 폐지는 “민법”개정 뿐만 아니라 호적 편제, 호적의 기재사항, 출생 및 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호적법상의 개선사항도 상당할 것임.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함.

3.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마련을 위한 여건조성 방안

-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호주제는 역사와 전통이 깊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신분등록 방식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家의 전통과 효를 지탱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대국민의 계몽활동이 시급함. 현재는 주로 민간여성단체들이 이를 담당하고 있지만, 여성부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대국민의 설득작업을 펴야 함. 일본, 중국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호주제폐지는 아래로부터의 요구보다는 사회구조 개혁을 위한 정책결정자의 의지에 의해 추진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변화되지 않고는 요원한 문제임. 헌법불합치판결이 난 동성동본금혼조항에 대한 폐지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국회의 현실임. 그러나 <호주폐지시민연대>의 국회의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만을 따르도록 한 조항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이 52.2%로 당연하다는 의견보다 높게 나온 점을 볼 때 이런 의견이 실제 입법의지로 실천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일부 남성의원들의 경우 “호주제”폐지에 동참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음. 이들 남성의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 방안으로 국회 내에 호주제 개선을 위한 남성(여성)의원 모임 등을 시도해 볼 예정임.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도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대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것임.

- 정치권에서 호주제 폐지논의를 앞당기는 방안으로 이번 대선에서 호주제 폐지 및 대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각종 토론회와 정책 요구사항에서 강제할 필요가 있음.
- 호주제도의 개선은 시급하며, 개선의 방향은 이미 가닥이 잡혀가고 있음. 그러나 이 제도의 개선과정이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한 바탕 위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함.

個人別 身分登錄制度를 제안한다.

조대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 家制度의 全面 廢止

원래 가제도는 호주와 가족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신분상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 규정된 것이다. 그러나, 1990. 1. 13. 개정된 민법 상의 가제도는 호주와 가족간의 권리의무관계를 모두 없애버렸기 때문에, 1991년 이후의 가제도는 신분상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신분제도로서는 의미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현행 민법 중 가제도에 관한 규정은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민법의 가제도가 호적의 편제기준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민법상의 가적을 호적의 편제기준으로 삼은 것은 호주와 가족의 관계가 민법상 권리의무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호적제도는 개인의 신분사항을 공적인 장부에 기재하여 공시하는 제도이고, 종전의 가제도는 호주와 가족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주 및 그 가족이라는 신분사항도 호적에 기재하여 공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1년 이후에는 호주와 가족의 관계가 권리의무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적에 호주와 가족간의 관계를 나타낼 필요가 없어졌고, 호적의 편제기준을 민법의 가적과 일치시킬 필요도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호적제도 자체의 사명에 비추어 새로운 편제기준을 정하면 된다. 가족단위로 할 것이냐, 개인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가제도 중 호주를 없애고 부부와 친자의 기본가족제도로 바꾸자는 구상이라고 보이는데, 개정안에 의한 가족제도도 가족들 사이에 어떠한 권리의무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신분관계의 실체법인 가족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개정안의 가족제도가 호적의 편제단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민법에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호적법에 규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민법 중 가제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면, 가족의 공유 추정에 관한 민법 제796조도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부부의 공유 추정에 관하

여 규정된 민법 제830조와 자녀의 특유재산에 관하여 규정된 민법 제916조로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2. 姓本制度의 維持

성본제도는 가제도와 무관한 것이고, 이름과 함께 개인의 동일성을 특정시키는 사회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서는 안되고 존속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성본제도는 가제도보다 더 뿌리 깊은 제도이고 개인을 특정시키는 요소로서 기본적인 사회질서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녀의 성분을 부모의 성분 중 누구의 성분을 따르게 할 것이냐, 성분의 변경을 허용할 것이냐, 본을 호적에 기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국민투표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3. 個人別 身分登錄制度의 提案

현행 호적제도는 민법의 가제도에 맞추어 편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 중 가제도에 관한 규정을 전부 폐지한다면, 호적의 편제방법을 새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편제방법은 호적제도 자체의 사명에 비추어 신분관계를 효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나 하는 관점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가. 가족별 호적제도의 문제점

1995년도에 호주제도가 폐지될 경우에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로써 부부와 친자를 단위로 편제하는 가족별 신분등록제도<가족부제도>를 검토한 적이 있다. 그것은 부부관계와 친자관계는 기본적인 친족관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족부에 함께 공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족별 편제방식이 현행 호적의 모습과 비슷하여 새 가족부의 개편작업이 용이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호적사무가 하나의 시스템에 의하여 전산화되는 것이 전제조건으로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족부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 하나의 가족부를 부부와 친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의

신분기록을 찾기 위해서는 그가 속해 있는 가족부를 찾아야 하므로 가족부를 쉽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본적과 가족부의 명칭 또는 가족부 대표자의 명칭>을 갖추어야 하고, ㉔ 인지·입양·혼인 등의 사유로 소속 가족단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가족부 소속의 이적(移籍)과 신분기록의 이기가 필요하며, ㉕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 부부의 호적과 자녀의 호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㉖ 혼인외의 출생자의 호적을 어느 호적에 편제할 것이냐, ㉗ 전혼 중의 자녀와 후혼 중의 자녀를 어느 호적에 편제시킬 것이냐 등의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개정안은 가족부를 색출하기 위하여 가족부를 대표하는 “기준인”을 부부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자녀의 신분기록을 친권 행사자의 가족부에 편제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남녀평등의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고, 부부동적의 원칙과 친자동적의 원칙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 가족부 제도는 부부와 친자관계를 하나의 장부에 공시하는 장점 때문에 채택하는 것이지만, 부부동적의 원칙을 혼인관계 존속중에만 적용하면 부부 또는 부모의 호적이 분리되는 경우가 생기고, 부모의 가족부가 서로 다른 경우를 막을 수 없는 이상 친자동적의 원칙을 온전히 구현하는 것은 원시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민법상의 가제도가 폐지된다면,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현재 전국의 호적이 단일시스템으로 전산화되고 있으므로, 이제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채택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나.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내용

(1) 모든 국민의 신분기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전산화하되,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그 신분기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를 채택하면서 모든 국민의 신분기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전산화하지 않으면, 친족관계의 파악이 어렵게 된다.

(2) 모든 국민의 신분기록사무를 하나의 신분등록청에서 지정된 신분기록관이 담당한다. 전산시스템에 의한 신분기록의 정확성과 변조가능성을 예방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그 열람과 등본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한다.

(3) 개인의 신분등록표는 출생신고·기아발견신고·취적신고·귀화신고 등에 의하여 새로 편제하고, 일생 동안의 신분변동사유를 그 신분등록표에 모두 기재한다. 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출생년월일·성별과 같은 개인의 특징을 위한 사항은 물론이고, 본인의 출생·사망·인지·입양·친자관계 변동·혼인·국적변경·개명 등의 신분변동사유를 모두 기록한다.

(4) 부부관계와 친자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별 신분등록표에 본인의 배우자·부모(친생부모와 양친부모를 모두 포함한다)·자녀(혼인중의 자, 혼인외의 자, 전혼중의 자, 재혼중의 자, 양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그리고, 신분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부모·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그 사람들의 각 신분등록표를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혼인신고에 의하여 부부의 각 신분등록표에 혼인사유를 기재함과 동시에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출생신고에 의하여 출생자의 신분등록표를 편제하면서 출생사유와 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과 아울러 그 부모의 각 신분등록표에 출생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인지나 입양신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리한다.

배우자·부모·자녀에 관해서는 그 신분등록표에 대한 검색부호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고, 그 밖의 개인특정사항이나 신분변동사유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5) 신분변동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신분사항을 기재할 때에 검색부호인 주민등록번호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주민등록번호의 정확성을 점검하도록 한다.

(6) 본인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배우자·부모·자녀의 친족관계 검색을 위하여 검색의 필요성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검색 자료로 비치한다.

(7) 경과조치로서 종전의 호적을 찾아볼 수 있도록 새로운 개인별 신분등록표에 종전 호적의 본적과 호주를 표시하여 줄 필요가 있다.

다.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장점

①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신분기록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신분기록의 색출기능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본적제도도 필요 없고, 신분기록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명칭과 같은 것도 필요 없다.

② 현행과 같은 호적사항란도 필요 없다. 호적사항란은 호적부의 편제·재제·전적·제적 등의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다. 개인별 신분등록표는 출생신고·취적신고·국적취득신고 등에 의하여 편제되는데, 그러한 사유를 신분사항란에 기재하면 되고 신분등록표의 편제사실을 별도로 기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본적이 없으므로 전적의 문제도 생기지 아니한다. 신분기록이 모두 전산화되므로 신분기록을 재제할 필요성도 없을 것이다. 본인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본인이나 그 배우자·부모·자녀의 친족관계 검색을 위하여 계속 검색 자료로 비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말소·제적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도 없다.

③ 가족부제도에서 자녀의 신분기록을 부모 중 누구의 가족부에 편제할 것인가에 관한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

④ 가족부제도에서 생기는 남녀평등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에서는 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부의 신분등록표와 모의 신분등록표에 모두 기재된다.

⑤ 이적(移籍)·이기(移記)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 신분등록표가 개인별로 편제되고 가족단위로 함께 편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가·분적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고, 인지·입양·혼인 등의 경우에도 다른 가족부로 이적하고 신분기록을 이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 신분기

록사무의 업무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⑥ 배우자·부모·자녀가 일괄 공시된다. 가족부제도에서는 부부와 자녀의 가족부가 서로 나누어지는 현상을 막을 수 없으므로, 친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가족부가 나누어지기 전의 가족부를 추적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개인별 신분등록표에는 본인의 배우자·부모·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기 때문에 부부관계와 친자관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사망자의 신분등록표를 보면 그 사람의 배우자·부모·자녀가 모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1순위 및 제2순위 상속인까지 바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그들의 사망 여부는 그들의 개인별 신분등록표를 보아야 알 수 있다.

⑦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줄일 수 있다. 개인별 신분등록표에는 본인의 신분변동사유만 기재되고 그 배우자·부모·자녀의 신분변동사항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들의 신분변동사유가 한꺼번에 공시되는 가족부제도에 비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더 보호할 수 있다.

⑧ 하나의 신분등록청에서 신분기록업무를 총괄하므로 신분변동신고서를 한 장만 제출하면 되고, 현행과 같이 여러 장 제출할 필요가 없다.

라.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문제점

㉑ 현재 전국의 호적이 단일 시스템으로 전산화되고 있지만, 그것은 현행 호적제도에 따른 것이므로, 개인별 신분등록제로 바뀌면 그 전산시스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㉒ 현재의 가족별 호적제도를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로 바꿀 경우에 본인의 신분사항에 관해서는 다른 바 없으므로 별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다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컴퓨터에 의한 검색부호이므로, 주민등록번호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한자 성명의 한글 표기를 통일시켜 정비할 필요가 있다.

㉔ 본인의 배우자·부모·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찾아서 기록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기존 호적도 부부와 그 자녀들이 하나의 호적에 편제되고, 그 호적에 배우자·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인과 그 배우자·부모·자녀들의 호적이 서로 다른 경우도 많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본인의 배우자·부모·자녀들을 모두 찾아내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려면 본인의 신분 내력에 관련된 호적·제적을 모두 찾아서 조사하여야 한다. 그 업무량이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기존 호적의 전산시스템에 호주 뿐만 아니라 가족도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호적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부가하고, 주민등록 전산시스템까지 동원한다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많은 인력과 시간과 예산이 필요할 뿐이다.

㉕ 신분기록이 개인별로 작성되기 때문에 친족들의 구체적인 신분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자의 신분등록표를 모두 열람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인별 신분등록표에 배우자·부모·자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를 클릭하여 필요한 신분등록표를 바로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신분등록표

본인	성명	김본인 [金本人]		배우자	성명	주민번호	비고
		이본인 [李本人]			박이남	650501-1567123①	이혼
	주민번호	650101-2234567 ①			최삼남	620601-1671234①	사망
	생년월일	1965년 1월 1일 10시 30분					
본	서울(김씨) 안양(이씨)	성별	여자				
부모	구분	성명	주민번호	자녀	구분	성명	주민번호
	모	김일녀	410201-2345671①		아	박일자	901011-1781234①
	부	이일남	380301-1456712①		들	최이자	941112-2812345①
	양부	Aby. M. American	미합중국 하와이 국민		딸	정삼자	971213-1923456①
	양모	Emy. F. American	미합중국 하와이 국민		양자		
본인의 신분사항	서울 중구 명동에서 출생, 1965년 1월 30일 모 김일녀가 신고.①						
	1966년 2월 3일 부 이일남(380301-1456712) 인지신고, 성과 본을 변경.①						
	1967년 3월 4일 Aby. M. American과 Emy. F. American의 양자로 입양신고(부 이일남과 모 김일녀의 입양승낙).①						
	1967년 12월 13일 법무부장관이 국적상실 통보.①						
	1988년 5월 6일 귀화신고.①						
	1988년 5월 6일 박이남(650501-1567123)과 혼인신고.①						
	1991년 6월 7일 남편 박이남(650501-1567123)과 협의이혼 신고.①						
	1993년 7월 8일 최삼남(620601-1671234)과 혼인신고.①						
	1995년 8월 9일 남편 최삼남(620601-1671234) 사망.①						
	2000년 9월 10일 정삼자(971213-1923456)를 양자로 입양신고(부 정삼남의 입양승낙).①						
2002년 10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사망, 동거자 정삼남 신고.①							
구호적	본적				호주		
	서울 용산구 후암동 321				최자남		